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용어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해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며,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적절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게 정비(안 제9조)
나. 물품 가격결정에 관해 누락된 조항 반영(안 제14조)
다.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안 제17조제4항)
라.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부분 정비(안 제2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 - 44244(2018. 8.10.)〕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 - 5993(2018. 8.10.)〕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8.23.~2018. 9.1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수책정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를 “비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서의 심사) ①----------정수관리대상물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7. 제1호 내지 제5호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 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비치하여야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